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서 및 안내

목 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1

1. 지급 신청서 ····· 1

2. 신청 위임장 ····· 2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3

4. 제출서류 ····· 4

5. 제출서류 발급방법 ····· 5

Ⅰ. 추진목적 ····· 6

Ⅱ. 정책개요 ····· 6

1. 정책내용 ····· 6

2. 지원대상 ····· 6

3. 제외대상 ····· 7

Ⅲ. 신청방법 ····· 7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7

Ⅳ. 심사 및 지급일정 ····· 8

1. 심사 ····· 8

2 지급 ····· 8

3. 지급중지 및 환수 ····· 8

【참고 1】 쉽게 알아보는 Q&A ····· 9

【참고 2】 소상공인의 정의 및 분류 ····· 16

【참고 3】 지원 제외업종 ····· 17

문의전화

일자리경제과 긴급생활안정TF팀(☎ 031-940-8400)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업종		사업개시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상시근로자수	명	2019년도 연 매출액	원
신청인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피해현황	매출피해액	2019년 월 평균매출액	2020년 월 평균매출액	매출액 감소율
		원	원	

※ 첨부서류: 신분증 1부, 사업자등록증 등 1부,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2019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금년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대비 100분의 10이상 감소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상가임대차 계약서 1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상기와 같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자 (본 인)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피위임자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본인은 상기 피 위임자(대리인)에게 위 위임사항에 대하여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파주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심사,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지급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5년)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파주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과장)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성 명	신동주	성 명	이효정
전 화	031-940-4520	전 화	031-940-4536
이메일	dnscjsfl61@korea.kr	이메일	elitew@korea.kr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파주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⑤ 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전부포함 발급)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⑥ 매출액 10억원 이하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년 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 자료) - 사업장현황신고서(2019년 자료)
⑦ 매출액 10% 감소사실 증빙자료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화면 캡쳐, 핸드폰 사진 출력본 등 가능)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그 외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금년도 월평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⑧ 임대차 계약서 사본*주택임대차 계약자는 신청불가		
⑨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⑩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		

* 매출액 10% 이상 감소여부 계산방법

2019년 월평균 매출액과 **2020년 1월 ~ 신청일 전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2019년 월평균 매출액 = 2019년 1월~12월 매출액 합계 ÷ 12개월
2020년 월평균 매출액 = 2020년 1월~신청일 전월 매출액 합계 ÷ 해당 개월수

(예) 2020년 4월 10일 신청했고
2019년 총 매출액 1억 2천만원 , 2020년 1월~3월 3개월간 매출액 합계 300만원 일 경우
2019년 월평균 매출액은 천만원,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은 100만원으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있는지 없는지, 몇명인지 확인방법은 Q&A 11쪽 참고**

[제출서류 발급방법]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 읍면동 행복센터에서 서식 수령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무인민원발급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무인민원발급기 - 세무서 방문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신청(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https://edi.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무인민원발급기 - 등기소 방문

온라인 서류발급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텍스 ☎ 126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02-3215-2674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정부24 ☎ 110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1544-0770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 안내

Ⅰ 추진목적

○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당면한 임차료·인건비 지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Ⅱ 정책개요

1 정책내용

○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사업체당 1백만원 정액 지급

2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파주시민 (2020.1.1. 기준)
②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2020.1.1. 기준)
③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전세계약자도 가능)
④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 10명 미만)
⑤ 2019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⑥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Q&A 10쪽 지급대상 체크리스트로 체크해보세요!

3 제외대상

①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단,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인 경우 신청가능)

④ 법인사업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Q&A 12쪽 제외대상 업종 표 확인!

III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4월 8일 ~ 9월 30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복센터 방문 • 제출서류 구비하여 상인협의회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 제출서류 스캔본을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 업로드(받는기관 : 사업장 소재지 동사무소 입력)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음

★ 온라인 신청시 서류제출 방법은 Q&A 14쪽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Ⅳ 심사 및 지급일정

1 심 사

○ 신청 후 7일 이내 지원여부 심사하여 지원 결정 및 지급

○ 신청인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2 지 급

○ 계좌입금

3 지급중지 및 환수

□ 근거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급일 당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책 내용 문의

일자리경제과 긴급생활안정TF팀(☎ 031-940-8400)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 1 쉽게 알아보는 Q&A

Q1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코로나 19로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임차료 지급, 인건비 지급 등 당면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Q2 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나요?

현금 100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1회 100만원만 지급)

Q3 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디로 가서 하나요?

○ 신청기간 : 2020년 4월 8일부터 ~ 9월 30일

○ 신청방법

① 사업장이 위치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② 상인협의회로 방문 신청

③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모두 스캔파일로 첨부 필요)

Q4 지원금 신청은 선착순 마감인가요?

신청은 선착순 마감이 아니며,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5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Q6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하고 나서 심사를 거쳐 지급까지 약 7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Q7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체크리스트1.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입니다.】

	항 목	예	아니오
1	파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집주소가 파주시로 되어있다.		
3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이외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근로가 수가 5명 미만이다.		
4	2019년 연간 매출액 총액이 10억원 이하이다.		
5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전세계약자도 가능).		
6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10분의 1 이상 감소했다.		

【체크리스트2. 아래 항목에는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지원대상입니다.】

	항 목	예	아니오
1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이다. * 단, 행정지도를 받아 휴업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2	2020년에 영업을 시작한 사업장이다.		
3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다른 시에서 파주시로 이전한 사업장이다.		
4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다른 시에서 파주시로 집주소를 옮겨왔다.		
5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영리 사업자이다.		
6	법인사업자이다.		
7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 더 알아보기

① 사업장 주소와 집주소가 모두 파주시인 사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사업장 주소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집주소가 모두 파주시인 사람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날짜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장 주소와 집주소가 모두 파주시로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②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개업했거나 파주시로 이전한 업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파주시에서 사업을 운영한 업체만 지원 대상입니다.

③ 상시근로자 수가 무엇인가요?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에 관계없이 직원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신고했다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원을 고용한 적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고객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찾기]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관할지역(고양지사)을 입력하여 확인



④ 현재 가게 운영이 어려워서 직원을 모두 내보냈는데 그러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인가요?

⇨ 현재는 직원이 아무도 없더라도 최근에 직원이 있었다면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③참고)

⑤ 2019년 연간 매출액 총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서류에 나타난 수입금액 총액이 2019년 총 매출액입니다.

⑥ 2019년 월평균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19년도 매출액 총액을 12로 나누면 월평균 매출액이며,
2019년에 새로 개업한 업체인 경우는 영업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월평균 매출액입니다.
(예) 2019년 1년간 총 매출액이 1억 2천 만원인 경우, 월평균 매출액은 천만원

⑦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0년 1월부터 지원금 신청일 전달까지의 금액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월평균 매출액입니다.

(예)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2020년 1월~3월 3개월간 매출 합계가 300만원이라면 월평균 매출액은 100만원

⑧ 현재 가게 운영이 어려워 잠시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 중이면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단순히 일시적으로 닫고 있는 가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건물소유자로서 자기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전 지원금은 임차료 부담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⑨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아래 표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한다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을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업종번호를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고객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찾기]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관할지역(고양지사)를 입력하여 확인

참고 :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업종

업종번호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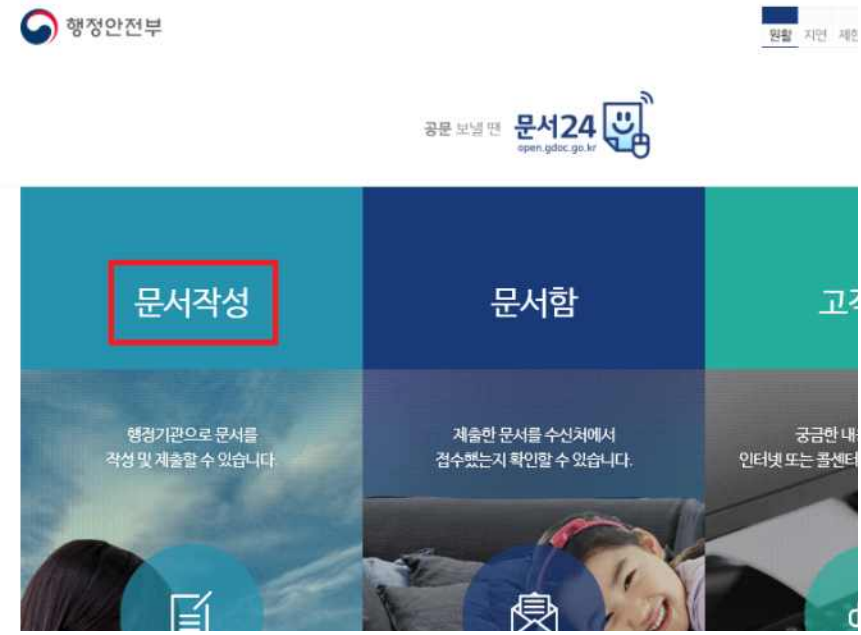
Q8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지원조건 및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한 후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스캔해서 스캔한 파일을 제출해야합니다.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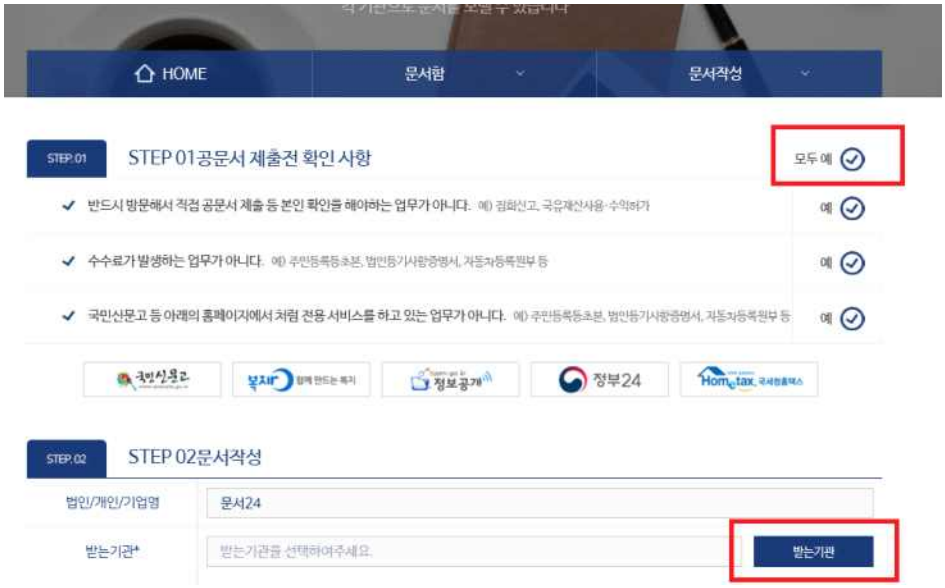
① 문서24 사이트에 접속해 문서작성 메뉴를 클릭한다.



② 개인사용자를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한다.



③ 공문서 제출전 확인사항에 모두 동의한 후 문서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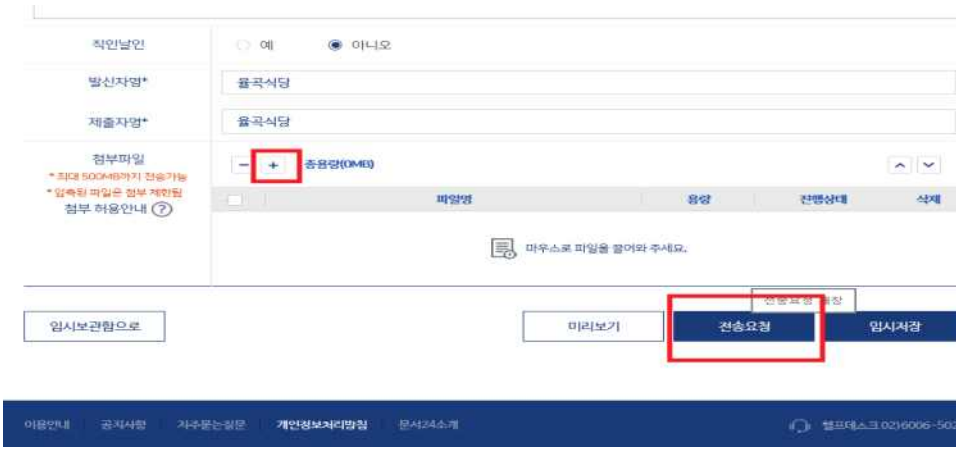


④ 받는기관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이름**을 검색한 후 선택을 누른다.
(읍면동 이름을 정확히 써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 문산읍, 금촌1동, 운정1동 등 행정동 명칭으로 검색
- 당하동, 목동동 등 법정동·리 명칭 검색 불가

⑤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모든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첨부파일에 업로드한 후 전송요청을 누른다.



참고 2 소상공인의 정의 및 분류

○ 소상공인의 정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밖의 업종)인 사업체를 말한다.

○ 업종,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분류

업 종		소기업 (매출액)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제조업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20억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가구 제조업	12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0억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80억원 이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120억원 이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0억원 이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억원 이하	
	기타 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0억원 이하	5명 미만
수도업		120억원 이하	5명 미만
농업.임업 및 어업		80억원 이하	5명 미만
광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건설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5명 미만
운수 및 창고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5명 미만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3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제외)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금융. 보험업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참고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업종번호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지원제외업종 확인방법

1) 사업자등록증명에 나와있는 내 업종명과 비교하여 확인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고객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찾기]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관할지역(예:고양지사)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업종번호 조회한 후 확인

*** 통계분류 포털 홈페이지(클릭)에서 표준산업분류표 전체를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